

의안번호	제443호
의결연월일	2017.12.7.

- 예산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17. 11. 20. 예산군수
- 회 부 일 자: 2017. 11. 22. 산업건설위원회
- 상 정 일 자: 2017. 12. 7.

제236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안전관리과장 김승영)

가. 제안이유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적용 범위(안 제2조)

-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함.
- 지원 결정(안 제3조)
 - 군수는 예산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음.
- 지원 기준(안 제4조)
 -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.
 1. 생활안정지원
 2. 간접지원
 3. 피해수습지원
 4.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-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(안 제6조)
 -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함.
 -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함.
-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(안 제7조)
 - 군수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간접지원 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.
- 재원의 확보(안 제10조)

-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.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박 상 덕)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 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피해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결정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, 피해복구 및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생략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